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석탄·가스·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탄소중립 재정 정책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정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1)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6명(6급 6명)을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허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

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며, 물재해대응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00.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부서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일부 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기획재정담당관·환경정책기술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환경정책기술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7호 중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환경통계정보시스템”으로 하한다.

25. 부 소관 통계업무의 총괄·관리

제5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행정정보화”를 “부 내 행정정보화”로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범정부 정보화 계획 수립

제5조제9항제7호 중 “환경지리정보체계”를 “부 내 공간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환경정보자료실”을 “부 내 정보자료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홈페이지·전자결재·정보망 등 환경정보화”를 “전

자결재·정보망 등 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부 내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재난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보호 기획·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등 정책 수립·운영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개선
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통신망·시스템 등의 보안정책 수립·시행
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총괄·조사·지도·점검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처리
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취소, 보호계획 수립·이행, 취약점 분석·평가 및 관리·지원
7.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및 사이버 침해예방·대응
8. 사이버 분야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등 추진
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호와 관련

된 사항

제5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11항(중전의제10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제7조제1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물순환 촉진을 위한 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정책”을 “순환경제기본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을 “순환경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인정”을 “인정·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제4호 중 “손해조사”를 “직권에 의한 손해조사”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기후에너지정책과·기후경제과·기후적응과·녹색전환정책과·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기후에너지기술과·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수소경제기획과·열산업혁신과·기후에너지신산업과·에너지안전효율과·국제협력과·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을 “기후에너지정책과·기후경제과·기후에너지재정과·기후적응과·녹색전환정책과·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기후에너지기술과·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수소경제기획과·열산업혁신

과·기후에너지신산업과·에너지안전효율과·국제협력과·기후에너지
국제협력팀”으로, “기후경제과장·기후적응과장·녹색전환정책과장·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을 “기후경제과장·
기후에너지재정과장·기후적응과장·녹색전환정책과장·탈탄소녹색수
송혁신과장·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8항제1호 중 “대응”을 “대응 및 에너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후변화”를 “기후변화 및 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
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9.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수립·이행

19의2. 2050 탄소중립위원회(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
항

제12조 제9항제9호 중 “검증기관”을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으로 하
며, 같은 항 제15호 중 “발전”을 “폐기물·발전”으로 한다.

제1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기후에너지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재정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조정
3.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개선
4.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5.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검토

6.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7.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변경
8.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9.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조정
10.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12.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3.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15. 기후대응기금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1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11항(중전의 제10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후변화”를 각각 “기후위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후위기 적응대책협의체 운영

4.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제5호 중 “기후변화 대응”을 “기후위기 적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

10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제14항(중전의 제13항)제2호 중 “업종별”을 “업종별 등 산업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목표 수립 및”을 “목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분야탈탄소”를 “분야 탈탄소”로 한다.

제12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제15항(중전의 제14항)제17호 중 “기술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한다.

제12조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제16항(중전의 제15항)제1호 중 “국가기후·에너지·환경 교육계획”을 “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후·에너지·환경 교육프로그램”을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환경 교육사”를 “환경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국군”을 “군·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로 한다.

제28조제7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5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

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822”를 “839”로, 일반직계 “814”를 “831”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5”를 “27”로 하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삭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6”을 “109”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5”를 “96”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2”를 “63”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7”을 “16”으로 하고,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822”를 “839”로, 일반직계 “814”를 “831”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5”를 “27”로 하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삭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1”을 “124”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89”를 “9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4”를 “5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

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7”을 “16”으로 하고,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계 “357”를 “358”로 하고,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6”을 “37”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계 “357”를 “358”로 하고,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6”을 “37”로 한다.

별표 13 중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을 신설하고,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를 “1”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계 “44”를 “50”으로 하고, “수의주사 “3”을 “9”로 한다.

별표 2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및 별표28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는 별표 7의2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예산처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u> 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u>기획재정담당관 ·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정보보호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u>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 ----- -----.
1. ~ 24. (생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u>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 · 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u>	25. <u>부 소관 통계업무의 총괄 · 관리</u>
26. (생략)	26. (현행과 같음)
27. <u>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u>	27. <u>환경통계정보시스템</u> ----- ----- -----
28. ~ 30. (생략)	28. ~ 30. (현행과 같음)

⑦ ~ ⑧ (생략)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촉진시행계획의 수립

2. 환경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
· 조정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7.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정보자료실 및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9. 홈페이지·전자결재·정보망 등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1. · 12. (생략)

<신설>

<신설>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법정부 정보화 계획 수립

2. 부 내 행정정보화 -----

3. ~ 6. (현행과 같음)

7. 부 내 공간정보체계-----

8. 부 내 정보자료실 -----

9. 전자결재·정보망 등 정보화

<삭제>

11. · 12. (현행과 같음)

13. 부 내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재난에 관한 사항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보호 기획·관리 및 정보
보호 관련 법령·지침 등 정

책 수립·운영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개인

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개선

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통신

망·시스템 등의 보안정책 수

립·시행

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

하기관의 정보보안 총괄·조

사·지도·점검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

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처리

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취소,

보호계획 수립·이행, 취약점

분석·평가 및 관리·지원

7.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이

버안전센터 운영·관리 및 사

이버 침해 예방·대응

8. 사이버 분야 위기대응 훈련

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등 추진

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정보

⑩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⑭ (생략)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u> <u><신설></u> 9. ~ 11. (생략) ⑯ ~ ⑱ (생략) 제9조(대기환경국) ①~④ (생략) ⑤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17. 운행 중인 <u>경유자동차의 연</u>	<u>보호와 관련된 사항</u>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u>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u> <u>· 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u> <u>운영</u>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 -----. 1. ~ 7. (현행과 같음) 8. <u>물순환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8의2. <u>물순환 촉진을 위한 법령</u> <u>의 입안·연구 및 발전</u> 9. ~ 11. (현행과 같음) ⑯ ~ ⑱ (현행과 같음) 제9조(대기환경국)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6. (현행과 같음) 17. ----- <u>자동차의 사용·</u>
--	--

<u>료 전환(LPG 또는 CNG 등)에</u> 관한 사항 18. ~ 26. (생략) ⑥ (생략) 제10조(자원순환국) ①·② (생략)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자원순환기본정책</u>의 수립 2. ~ 3. (생략) 4. <u>폐기물</u>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생략) 6. <u>자원순환</u>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생략) 8. 순환자원 <u>인정</u>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9. ~ 10. (생략) ④ ~ ⑦ (생략) 제11조(환경보건국) ① ~ ③ (생략)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환경오염사고의 <u>손해조사</u>에	<u>운행 제한</u>----- --- 18. ~ 2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원순환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순환경제기본정책</u>----- 2. ~ 3. (현행과 같음) 4. <u>순환경제</u> ----- ----- 5. (현행과 같음) 6. <u>순환경제</u> ----- ----- 7. (현행과 같음) 8. ----- <u>인정·지정</u> ----- ----- 9. ~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보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직권에 의한</u>
---	---

관한 사항

5. ~ 17. (생략)

⑤ ~ ⑦ (생략)

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 ~

⑥ (생략)

⑦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과 · 기후경제과 · 기후적응과 · 녹색전환정책과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기후에너지기술과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수소경제기획과 · 열산업혁신과 · 기후에너지신산업과 · 에너지안전효율과 · 국제협력과 ·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및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을 두며, 기후경제과장 · 기후적응과장 · 녹색전환정책과장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장 · 기후에너지기술과장 · 수소경제기획과장 · 열산업혁신과장 ·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 · 에너지안전효율과

손해조사-----

5. ~ 17.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기후에너지정책과 · 기후경제과 · 기후에너지재정과 · 기후적응과 · 녹색전환정책과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기후에너지기술과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수소경제기획과 · 열산업혁신과 · 기후에너지신산업과 · 에너지안전효율과 · 국제협력과 ·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 기후경제과장 · 기후에너지재정과장 · 기후적응과장 · 녹색전환정책과장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

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 5. (생략)

6. 기후변화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7. ~ 18. (생략)

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0. ~ 18. (생략)

19.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수립·이행 및 2050 탄소중립위원회(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 ~ 38. (생략)

-----.

⑧ -----
-----.

1. ----- 대응 및 에너지 -----

2. ~ 5. (현행과 같음)

6. 기후변화 및 에너지 -----

7. ~ 18. (현행과 같음)

<삭제>

10. ~ 18. (현행과 같음)

19.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수립·이행

19의2. 2050 탄소중립위원회(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0. ~ 38. (현행과 같음)

⑨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0. ~ 14. (생략)

15. 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6. ~ 18. (생략)

<신설>

⑨ -----
-----.

1. ~ 8. (현행과 같음)

9. -----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

10. ~ 14. (현행과 같음)

15. 폐기물·발전 -----

16. ~ 18. (현행과 같음)

⑩ 기후에너지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재정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조정

3.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개선

4.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5.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검토

6.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7.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변경

⑩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8.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9.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조정

10.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12.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3.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15. 기후대응기금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1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1. 기후위기 -----

2. <u>기후변화</u> 관련 교육·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u>기후위기</u> ----- ----- -----
3. <u>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체 운영 및 기후변화 관련 협의체 운영</u>	3. <u>기후위기 적응대책협의체 운영</u>
4. <u>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u>	4. <u>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평가에 관한 사항</u>
5. <u>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	5. <u>기후위기 적응</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u>	7. <u>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u> -----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10.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⑪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⑬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u>업</u>	2. ----- <u>업</u>

종별 협의체 운영

3.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 · 5. (생략)

6. 기후 · 에너지 · 환경 분야 탄소 전환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7. ~ 11(생략)

⑭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17. 기후 · 에너지 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 시행

18. ~ 26. (생략)

⑮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 · 에너지 · 환경 교육정책의 총괄 · 조정 및 국가기후 · 에너지 · 환경 교육계획의 수립 · 시행

2. · 3. (생략)

4. 우수 기후 · 에너지 · 환경 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

종별 등 산업계 -----

3. -----

-- 목표 -----

4. · 5. (현행과 같음)

6. ----- 분야 탈

탄소 -----

7. ~ 11(현행과 같음)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

1. ~ 16. (현행과 같음)

17. ----- 전문인력

18. ~ 26. (현행과 같음)

⑮ (현행 제15항과 같음)

1. -----

----- 국가환경

교육계획-----

2. · 3. (현행과 같음)

4. --- 환경교육프로그램-----

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u>환경 교육사</u>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u>환경교육사</u> ----- -----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15. <u>국군</u> 기후·에너지·환경 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5. <u>군·관</u> ----- ----- -----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①⑥ 수소경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⑦ (현행 제16항과 같음)
①⑦ 열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⑧ (현행 제17항과 같음)
①⑧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⑨ (현행 제18항과 같음)
①⑨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⑩ (현행 제19항과 같음)
②⑩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⑪ (현행 제20항과 같음)
②⑪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⑫ (현행 제21항과 같음)
②⑫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⑬ (현행 제22항과 같음)
제28조(환경관리국) ① ~ ⑥ (생 략)	제28조(환경관리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⑧ (생략)

제34조(관할구역 등) ① (생략)

제37조(기획평가국) ① (생략)

③ ~ ⑥ (생략)

제53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생략)

<신설>

제58조(한시정원) ①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

⑦ -----
-----.

1. ~ 9. (현행과 같음)

10. 1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관할구역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7조(기획평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53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58조(한시정원) ① <삭제>

<u>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u> ②・③ (생 략) ④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⑤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2027년 12월 31일</u> ----- ----- -----. ⑤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22		839	+17	
일반직	계		814		831	+1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5		27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9		30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삭 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	<u>96</u> · ·	<u>109</u> · ·	+1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u>95</u> ·	<u>96</u> ·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u>62</u> ·	<u>63</u> ·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u> <u>별정직 7급 상당(비서)</u> ·	<u>17</u> <u><신 설></u> ·	<u>16</u> <u>1</u> ·	-1 +1

	.		.		.	
--	---	--	---	--	---	--

[별표 7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22	832	+10
일반직 계	814	824	+1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5	26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삭 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6	105	+9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 <u>95</u> • •	• <u>96</u> • •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u> <u>별정직 7급 상당(비서)</u> • •	<u>17</u> <u><신 설></u> • •	<u>16</u> <u>1</u> • •	-1 +1

[별표 8]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22	839	+17
일반직 계	814	831	+1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5	27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9	30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삭 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	<u>111</u> · ·	<u>124</u> · ·	+1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u>89</u> ·	<u>90</u> ·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54</u> · ·	<u>55</u> · ·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u> <u>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u> <u>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u> <u>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u> <u>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u> <u>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u> <u>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u>	<u>17</u>	<u>16</u>	-1

<u>별정직 7급 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8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22	832	+10
일반직 계	814	824	+1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5	26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삭 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1	120	+9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 <u>89</u> • •	• <u>90</u> • •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u> <u>별정직 7급 상당(비서)</u> • •	<u>17</u> <u><신 설></u> • •	<u>16</u> <u>1</u> • •	-1 +1

[별표 9]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57</u>	<u>358</u>	+1
일반직 계	<u>357</u>	<u>358</u>	+1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 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 구사	<u>36</u>	<u>37</u>	+1
·	·	·	
·	·	·	

[별표 10]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57</u>	<u>358</u>	+1
일반직 계	<u>357</u>	<u>358</u>	+1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 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 구사	<u>36</u>	<u>37</u>	+1
·	·	·	
·	·	·	

[별표 1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4</u>	<u>50</u>	+6
일반직 계	<u>44</u>	<u>50</u>	+6
·	·	·	
수의주사	<u>3</u>	<u>9</u>	+6
·	·	·	
·	·	·	

[별표 2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7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재해대응과	4명 (5급 2명, 6급 2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기후에너지정책실 수소열산업 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기후에너지정책실 국제협력관	0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4. 기후에너지정책실 수소열산업 정책관 열산업혁신과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5.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 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 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7.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 정책관 풍력산업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8.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 관 계통운영혁신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9. 에너지전환정책실 원전산업정 책관 원전지역협력과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28]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8조 관련)

1. < 삭 제 >

2. 제5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3. 제5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

4. 제58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5. 제58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